



특별기고

전문건설업계의 정당한 요구

건설업계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다. 정부 주도하에 지난해 10월에 출범시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대외적으로는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건설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추진방향이다. 그런데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한자성어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 공생발전의 가장 초석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화목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업계는 다양한 요구와 노력을 해왔다. 여기서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될 정당한 전문건설업계의 요구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국토해양부 건설업체수 통계를 보면, 전문건설업체가 전체 건설업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전체 전문건설업체 계약실적은 약 75조원에 이른다.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 원가 구성분석' 자료를 보더라도 종합건설업체의 외주비 비율이 55% 수준임을 볼 때,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자의 역할이 절반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계는 국가경제의 근간이었으며, 건설산업의 최대 다수 구성원이었고, 건설생산의 실질적인 주체였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의 발전 없이는 전체 건설산업의 발전을 논하기 어렵다.

건설생산체계 전문화·분업화 이행돼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건설업계의 첫 번째 정당한 요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건설생산체계의 전문화와 분업화가 제대로 이행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건설산업은 다양한 공종의 건설기술이 복합된 기술산업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전체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조정하는 종합건설업과 각 공종별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29개의 전문공사 업종별로 시공의 전문화와 분업화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문건설업체를 외면한 채 종합건설업체가 모든 유형의 공사에 대해 스스로의 장비와 인력으로 상당부분 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흔히 종합건설업체의 현장대리인은 오케스트라



유 일 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의 지휘자에 비견된다고 한다. 오케스트라를 일사분란하게 이끌어가는 지휘자처럼 건설공사에서의 종합건설업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 종합건설업체는 특화된 계획능력과 관리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유형의 건설공사에서 많은 하도급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하는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자신이 지휘도 하면서 직접 연주까지 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등의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종합건설업체들도 건설산업 발전과 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EC(engineering contractor)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하도급업체가 보다 더 전문화, 분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일에 대한 공정한 대가 제때 지급을

전문건설업계의 두 번째 정당한 요구는 일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제때(timely)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2011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원도급공사 금액 대비 하도급공사 금액 수준이 60%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0%를 넘어선다. 원도급자로부터의 기성금 수령도 30일~60일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전체의 43% 이상이고, 심지어 90일 이상인 경우도 6%를 넘어선다. 하도급공사 입찰과정에서도 원도급자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재입찰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약 25% 가량 나왔으며, 하도급계약시의 부당 특약 요구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요구 등도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모든 종합건설업체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종합건설업체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예정가격 대비 72% 수준의 원도급공사 최저가낙찰률에 평균 67% 수준의 하도급낙찰률을 반영하면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하는 하도급공사비는 예정가격 대비 고작 48% 수준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적정공사비에 채 절반도 안 되는 하도급공사비로 전문건설업체의 기술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전문건설업체간 과당경쟁이라는 배경적 문제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적정공사비를 요구하기에는 무리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일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